

瑞山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 書

總務委員會

2000. 3. 22

1. 審 查 經 過

가. 提出日字 : 2000. 3. 14

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
다. 回附日字 : 2000. 3. 14

라. 上程日字 : 2000. 3. 22

2. 提 案 說 明 要 旨 (提 案 說 明 : 自 治 行 政 課 長 方 景 泰)

가. 提 案 理 由

- 묘지·납골당 및 하수, 폐수, 쓰레기 분뇨처리등 특정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타 시·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서
- 자치단체간 수당지급의 균형을 유지하고,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협오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업무추진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.

나. 主要骨子

- 별표 3중 「분뇨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지 금액」을 현행 “130,000원”에서 “150,000”으로, 「하수·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」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현행 “100,000”에서 “150,000원”으로, 「시체화장 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」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현행 “150,000원”에서 “180,000원”으로 각각 상향조정함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및 별표9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수당의 금액결정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- 지공12512-1('94.1.4)호에 의하여 시달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표준안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사정등 자체실정에 따라 결정토록 규정함에 따라
- 혐오시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업무추진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표준안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내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145호
의결 년월일	2000. (제 회)

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출자	서산시장
제출년월일	2000. 3. 14.

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3. 14.
제출자 : 서산시장

개정이유

- 묘지·납골당 및 하수·폐수·쓰레기·분뇨처리등 특정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타 시·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서
- 자치단체간 수당지급의 균형을 유지하고,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혐오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업무추진 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별표 3중 「분뇨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 지급액」을 현행 “130,000원”에서 “150,000원”으로, 「하수·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」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현행 “100,000원”에서 “150,000원”으로, 「시체화장 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」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현행 “150,000원”에서 “180,000원”으로 각각 상향조정함.

기타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해당없음.
- 관련법규
 -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, 별표 9
 -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표준안(지공 12512-1호, '94. 1. 4)

○ 장려수당 지급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적법성 검토

-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및 별표 9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수당의 금액결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- 지공 12512 - 1('94. 1. 4)에 의하여 시달된 『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표준안』에 의하면 월 50,000~200,000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등 자체실정에 따라 적정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
- 월 200,000원을 초과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할 경우에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필요함.

⇒ 따라서 현재 상향조정된 장려수당은 5만~20만원 범위내
이므로 적법함.

○ 서산시 장려수당 지급현황(2000. 3월현재)

구 분	장려수당 지급 현황(명)				비 고
	분 노	하수·폐수	쓰레기	묘지·납골당	
25명	.	.	24명	1명	

※ 참고사항

- 분노·하수·폐수 : 분노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은 시험가동중으로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없음.
- 쓰레기 : 양대동쓰레기매립장 근무자, 본청 및 읍면동 청소차 기사 등 24명
- 묘지·납골당 : 인지면 공원묘지 관리자 1명(기능9급 유요근)

○ 도내 시·군별 장려수당 지급금액 현황

작성기준일 : 2000. 3월현재

시 군 별	장려수당 지급 현황				비 고 (재정자립) %
	분 노	하수·폐수	쓰레기	묘지·납골당	
평균금액	145,000	123,000	128,000	172,000	29.6
천안시	150,000			150,000	51.6
공주시	150,000			×	21.6
보령시	150,000	50,000		200,000	19.1
아산시	150,000			×	38.5
서산시	130,000	100,000		150,000	35.5
논산시	180,000			×	24.8
금산군	150,000	130,000		180,000	19.4
연기군	150,000			×	32.0
부여군	150,000	×	×	×	17.5
서천군	150,000	×	100,000	×	22.9
청양군	160,000	×	×	×	12.2
홍성군	150,000	×	120,000	180,000	19.9
예산군	180,000	×	×	×	26.8
태안군	150,000	×	×	×	28.9
당진군	170,000	×	×	×	42.4

○ 전국 시·군별 장려수당 지급금액 표본조사 현황

【조사분야 : 분뇨, 쓰레기】

작성기준일 : 99년말 현재

지급금액	개소	시·군	비고
계	40		
200,000원	5	용인, 양평, 가평, 광주, 안양	
180,000원	6	의정부, 경주, 영천, 태백, 구리, 마산	
170,000원	1	대전	
150,000원	22	칠곡, 익산, 동두천, 전주, 해운대, 창녕, 남원, 옥천, 아산, 울산, 안동, 포항, 연기, 고양, 목포, 구미, 거창, 진주, 단양, 청주, 영주, 공주	
120,000원	6	영암, 부산, 제주, 보은, 제천, 충주	

※ 상기자료 제공 : 천안시

서산시 조례 제 호

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장려수당 지급 구분표

(단위: 원)

지 급 대 상	지 급 액
분뇨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150,000
하수·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150,000
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180,000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
<p>[별표 3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60%; text-align: center;">지 급 대 상</th> <th style="width: 40%; text-align: center;">지 급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분뇨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30,000</u></td> </tr> <tr> <td>하수·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00,000</u></td> </tr> <tr> <td>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50,000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지 급 대 상	지 급 액	분뇨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<u>130,000</u>	하수·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<u>100,000</u>	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<u>150,000</u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60%; text-align: center;">지 급 대 상</th> <th style="width: 40%; text-align: center;">지 급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50,000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50,000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80,000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지 급 대 상	지 급 액	-----	<u>150,000</u>	-----	<u>150,000</u>	-----	<u>180,000</u>
지 급 대 상	지 급 액																
분뇨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<u>130,000</u>																
하수·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<u>100,000</u>																
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<u>150,000</u>																
지 급 대 상	지 급 액																
-----	<u>150,000</u>																
-----	<u>150,000</u>																
-----	<u>180,000</u>																

수당지급조례 개정관계 법령발췌

【지방공무원수당규정】

제14조(특수업무수당)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(연구직공무원은 별표 9의 제3호 또는 제18호의 수당에 한한다)을 지급한다.

[별표 9]

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

구분	수당명	지 급 대 상	지급액 및 지급방법
		생	략
특수 행정 분야	18, 장려 수당	라. 위생처리장·하수처리장·쓰레기처리장 등 분뇨·하수·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마. 화장장·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바. 공원묘지·납골당등 묘지나 납골당의 관리·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	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
		생	략

【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표준안】 : 붙임참조

- 지공12512-1('94. 1. 4)호에 의하여 시달